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1
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

교육 목표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특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임을 이해한다.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알아보고 더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방법을 모색해본다.



강의 소개

디지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우리는 디지털 중심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PC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 이후 기술은 더욱더 빠르게 발전했고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을 넘어 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화제인 지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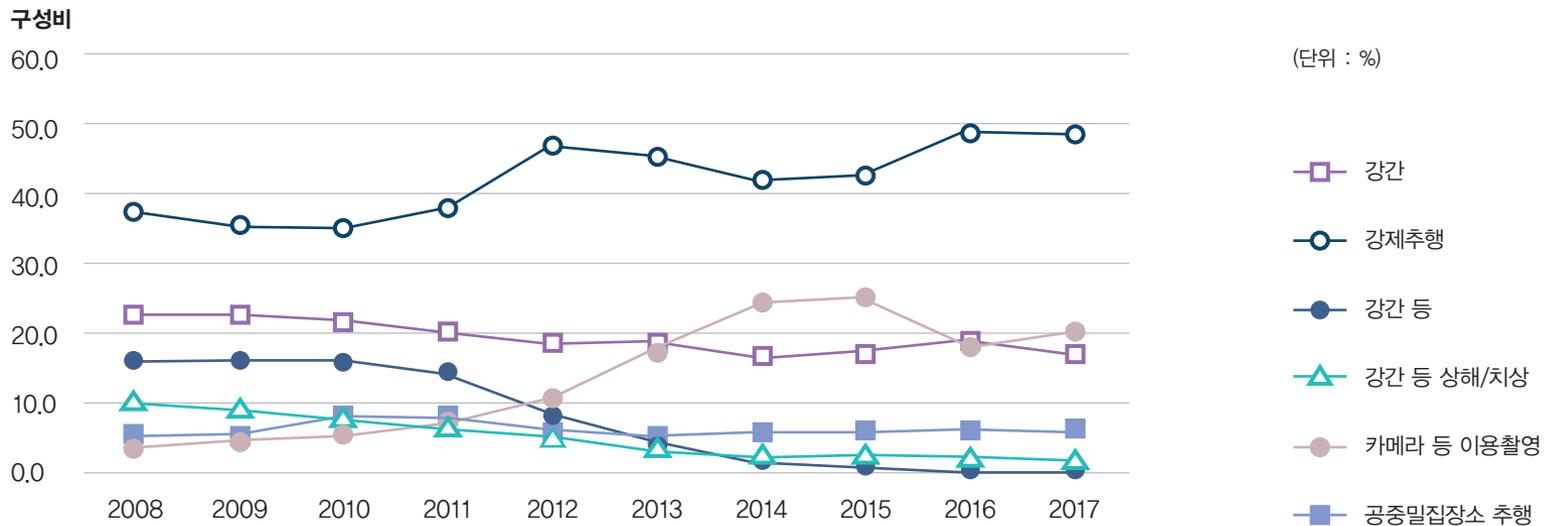
새로운 기술이 열어준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쉽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도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기본 교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 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통계¹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구성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히 증가한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8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까지 24.9%의 비중을 보였고 2016년 17.9%로 축소되었다가 2017년에는 20.2%로 증가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8년~2017년)

¹ 출처: 대검찰청(2018). <2018 범죄분석>.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2017. 9. 26.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1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²**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여성가족부, 2018. 4~현재)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수사전담팀 구성(2018. 1.)
-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³ 청구를 위한 법률 개정(2018. 9. 13.)⁴
- ▶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 시행(2018. 12. 18.)⁵
- ▶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등

²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디지털 성범죄 유통실태 보고서>. 서울특별시.

³ 남을 대신하여 빛을 갠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29호, 2018.9.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복제 영상,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 등이 피해 촬영물 범위에 포함되었고, 처벌이 강화됨.

불법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 재유포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 등에 대한 동의 없는 유포 및 유통, 협박 등 관련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시행 2019. 8. 20.]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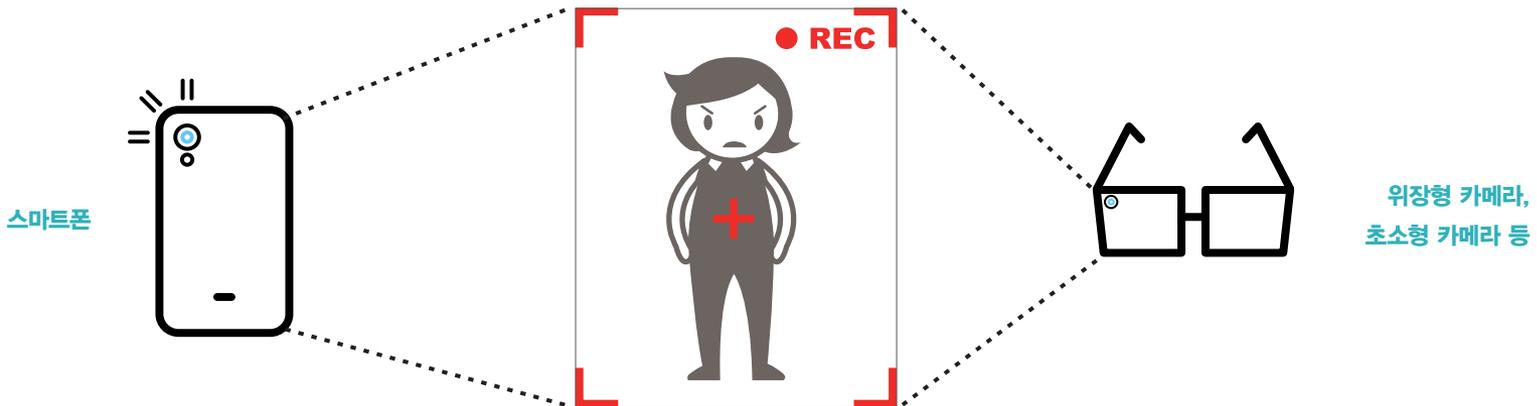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렸지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불법 촬영”이라고 사용합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라는 정의에 따라 스마트폰 카메라나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 등의 사진과 영상, 기타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기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지에 반해, 즉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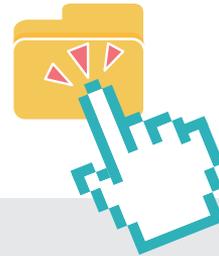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유형은 불법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쉽게 말해 **유포·재유포하고 유통·소비하거나 또는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외의 피해 촬영물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 보는 것 모두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가해입니다.



단순한 흥미로 소비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반포

성적 영상물을 불특정·다수에게 교부하는 행위

판매

대가를 지급 받고 성적 영상물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임대

대가를 지급 받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성적 영상물을 빌려주는 행위

제공

성적 영상물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전시

성적 영상물을 불특정·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상영

성적 영상물을 재생하여 불특정·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두는 행위

불법 촬영과 유통·소비, 촬영물 유포와 협박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세부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타인의 전신 또는 신체의
일부분, 뒷모습, 치마 속, 가슴,
얼굴, 나체 등을 비롯해
용변 보는 장면,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유통, 공유

웹하드·포르노 사이트·SNS 등에
불법 촬영물을 유통,
공유하는 사업자, 이용자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포르노 사이트·SNS 등에
불법 촬영물 또는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업로드
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온라인
공간에 게시, 합의하고 촬영한
성적 영상 또는 합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 최초 유포자 혹은
제삼자에 의한 재유포 등



유포 협박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 요구,
금전 요구,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 등

사진 합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행위에 대한 피해까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⁶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합성

일상적인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변형 후 유포:
소위 지인 능욕, 지인 합성 등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사진 도용

디지털 그루밍

대인관계와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조종 기술을 사용해
성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 폭로를
막기 위한 일종의 길들임 행위

⁶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 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
출처: 2019년 1월 24일 자 정부 보도자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디지털 콘텐츠: 복제와 전송, 변형의 편리함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성범죄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화된 형태로 유통·소비되거나 유포·재유포되며, 디지털 콘텐츠는 아날로그 콘텐츠와 달리 복제와 전송, 변형이 매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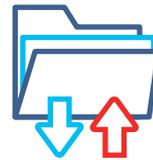
영구적인 품질

시간이 흘러도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는 한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



무한 복제 가능

원본을 무한하게 복제할 수 있고 원본과 복사본의 품질이 같다.



편리한 보관과 전송

비용이나 공간에 큰 제약이 없어 편리하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다.



쉬운 편집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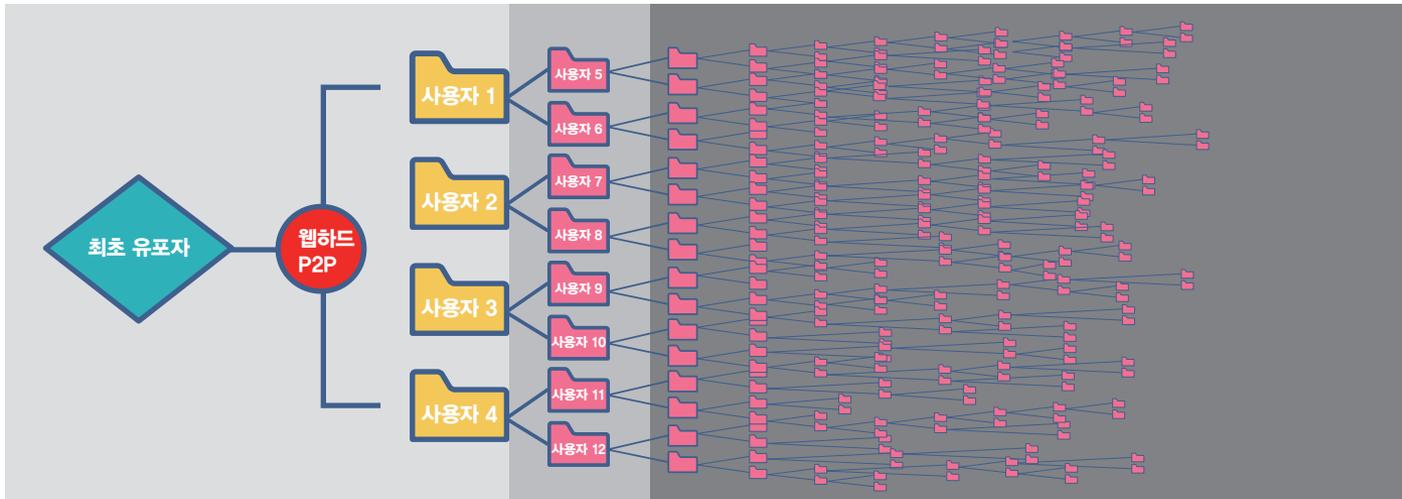
간단한 기술이면 내용을 수정, 변형하는 편집이 가능하고 재가공도 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영구적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편리하게 보관·전송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편집·변형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도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지속적이고 확장적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특성⁷

⁷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결과 및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⁸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UN,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 또는 관련법, 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지만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나 연관성 또는 기존 폭력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⁸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https://www.stop.or.kr/women/>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카르텔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카르텔(Kartell)이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의 이윤을 함께 높이기 위해 시장 경쟁을 피하고 연합하는 일종의 담합입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카르텔을 말하며, 이것이 불법 피해 촬영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 단속을 지속해도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출처: 2019년 1월 24일 자 정부 보도자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법률⁹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 2,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104조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07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제15조(미수범)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중략-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중략-
 -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략-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중략-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중략-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사업법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¹⁰(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10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통신사업법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중략-

1. -중략-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중략-

제10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11., 2018. 12. 24.〉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중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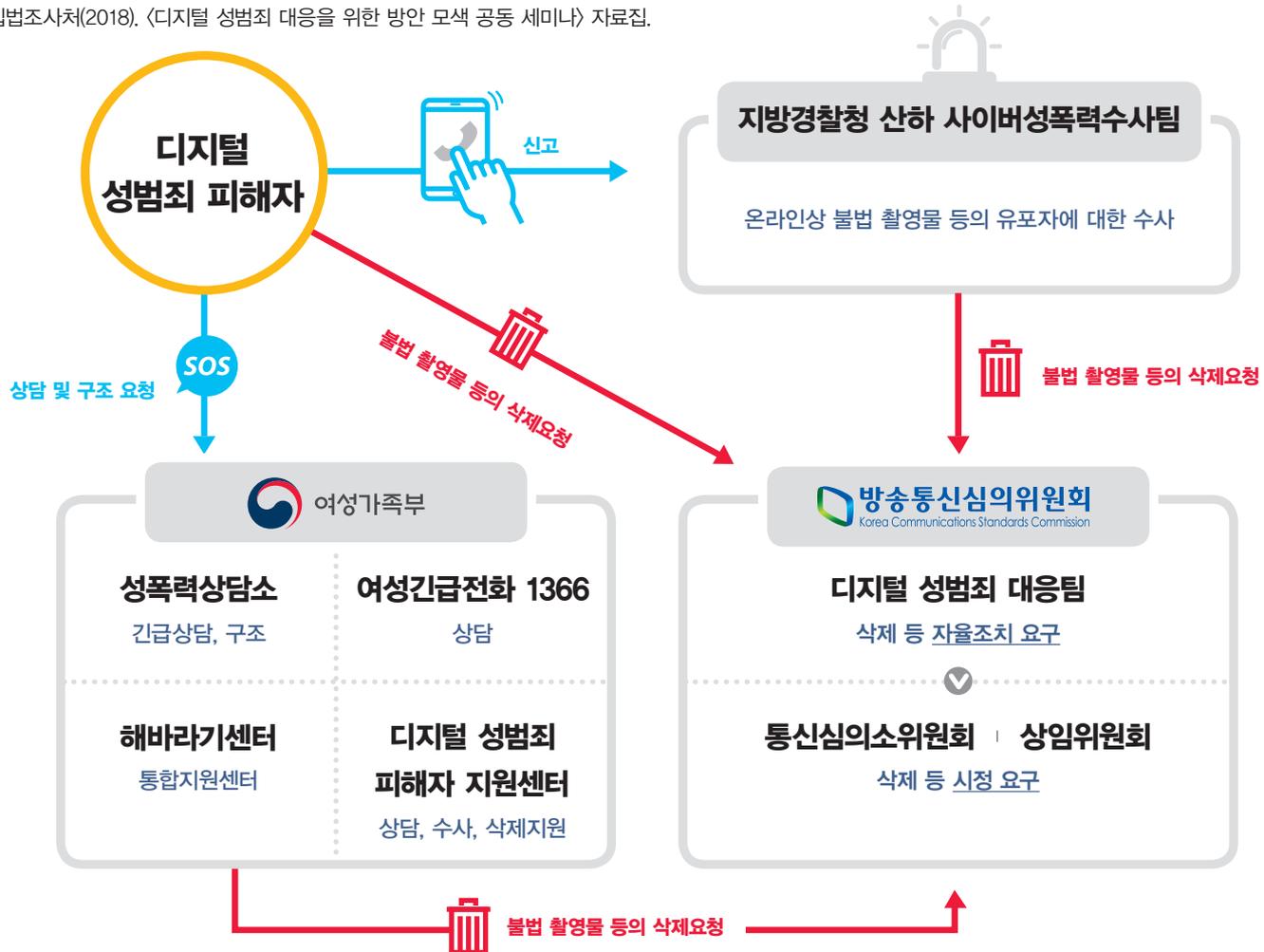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¹¹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¹¹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자료집.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유형¹²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구분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지원	○	○	○	○
수사 지원	-	○	○	○
삭제 지원	-	-	-	○
법률 지원 연계	○	○	○	○
의료 지원 연계	○	○	○	○
보호시설 연계	○	○	○	○

주: 성폭력상담소 수사 지원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위한 동행.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2017년 168개소)는 경찰이 상주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수사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수사 지원은 채증 자료 작성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짐.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018).

¹²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자료집.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상담 신청 방법  digital_sc@hanmail.net  02-2275-2201
상담시간 월~토, 10:00~17: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신청 방법  (비공개) 게시판 www.women1366.kr/stopds
 02-735-8994

상담시간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점심 시간 12:00~13:00)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17:00)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 신청 방법  국번 없이 1366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 신청 방법  hotline@cyber-lion.com  02-817-7959
상담시간 전화 상담은 평일 13:00~17:00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도래상담실 S-N-S(Stop N Start)

<http://www.teen-up.com/Default.asp>

상담 신청 방법  (비공개) 게시판
<http://www.teen-up.com/load.asp?subPage=410>
 010-3232-1318, 010-8232-1319
 카톡 cybersatto  라인 10upsns

상담시간 상담 시간 상시, 카톡·라인은 오후 11시까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긴급 지원하는 활동가입니다.

찾아가는 면접상담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힘들 때 지지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진술 동행

불법 촬영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동행합니다.

채증(증거수집) 방법 안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을 알았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진술 시 제출할 증거,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방향 찾기

피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한지 지원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기관 연계

의료/심리상담 기관 연결, 삭제 지원기관을 연계,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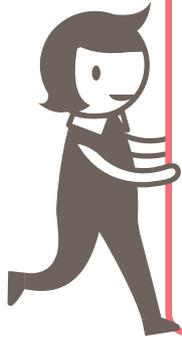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1.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 단톡방, SNS 등에 유포 및 재유포
2.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협박
3. 웹하드 등에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단톡방 등에 사진, 영상과 함께 성적인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상담 seoulcitizen.kr digital_sc@hanmail.net(월~토, 10:00~17:00)

전화 상담 ☎ 02-2275-2201(월~토, 10:00~17:00)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차별과 폭력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
내 것에 대한 아집을 벗어나 함께 하는 자비로운 세상,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www.namuright.or.kr